

서울고등법원

제 1 0 행 정 부

판 결

사건	2011누1933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아 담당변호사 방경희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2. 2. 선고 2010구합34736 판결
변론종결	2011. 6. 3.
판결선고	2011. 7.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 7.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H 부당 징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전우진 정재우